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 858호 2011. 11 29(화)

### ◀ 훈 령 ▶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43호) ..... 2

### ◀ 고 시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1-100호) ..... 9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1-101호) .....11

### ◀ 공 고 ▶

○하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제2011-1100호) ..... 12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제2011-1103호) ..... 15

○공 시 송 달 공 고(제2011 -1106호)..... 17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공고(제2011-1109호) ..... 19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시의회공고 제12호) ..... 25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26

회 람									
--------	--	--	--	--	--	--	--	--	--

**훈 령**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일

포항시 훈령 제 243호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포항시 향토생활관(이하 “향토생활관” 이라 한다)” 를 “포항시 향토 생활관”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향토생활관” 을 “포항시 향토생활관(이하 “향토생활관”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거주사실 30점, 생활정도 30점, 학교기준 25점, 성적기준 10점, 그 밖에 5점” 을 “거주사실 25점, 생활정도 30점, 학교기준 20점, 성적기준 15점, 그 밖에 10점”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외하며 1가구당 1명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를 “제외 한다” 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입생-수학능력시험 점수” 를 “신입생-3학년 1학기 내신성적점수” 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포항시 향토생활관” 을 “향토생활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세부 선발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총 점			100
거주사실 (25)		1. 10년 이상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3년 이상 ~ 5년 미만 4. 1년 이상 ~ 3년미만	25 20 15 10
생활정도 (재산세납부액) (30)		재산세 납부액(세대합산) 기준 1. 재산세 미과세자 2. 10,000원 미만 3.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4.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5. 100,000원 이상	30 25 20 10 5
출신학교 기준 (20)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중 1.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 기 타	20 15 10 5
성 적 기 준 (15)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기준 1. 평균 2등급 이상 2. 평균 4등급 이상 ~ 2등급 미만 3. 평균 4등급 미만	15 10 5
	-재학생, 복학생-	1.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 2. 직전학기 평점 3.3 이상 ~ 4.0미만 3. 직전학기 평점 3.3 미만	15 10 5
기 타 (10)		1.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 장애인(학생 본인) 4. 다자녀가정(셋째이상) 5. 다문화가정	10

※ 동점일 경우는 생활정도가 우선인 순위자 선발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해당학교 내 포항시 향토생활관(이하 “향토생활관”이라 한다)의 입사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포항시 향토생활관 ----- -----</p>
<p>제2조(입사생의 자격 등) ① 향토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당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복합생 포함)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포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제2조(입사생의 자격 등) ① 포항시 향토생활관(이하 “향토생활관”이라 한다)-----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선발기준 등) ① (생 략) ② 심사평점은 100점 만점에 거주 사실 30점, 생활정도 30점, 학교 기준 25점, 성적기준 10점, 그밖에 5점을 적용한다.</p>	<p>제3조(선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 사실 25점, 생활정도 30점, 학교 기준 20점, 성적기준 15점, 그밖에 10점-----</p>
<p>③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1년)으로 하며,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대학교 기숙사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는 제외하며 1가구 당 1명에 한하여 선발 할 수 있다.</p>	<p>③ ----- -----제외한다.</p>
<p>④ (생 략)</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5조(입사신청) (생 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 략)</li> <li>3. 성적증명서(재학생-직전학기, <u>신입생-수학능력시험 접수</u>)1부.</li> <li>4. ~ 5. (생 략)</li> </ol> <p><b>제8조(위원회) 포항시 향토생활관의</b>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입사생선발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임무  는 포항시시정조정 위원에서 대행  한다.</p>	<p><b>제5조(입사신청) (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li>3. -----  <u>신입생-3학년 1학기 내신성적 접수</u></li> <li>4. ~ 5. (현행과 같음)</li> </ol> <p><b>제8조(위원회) 향토생활관-----</b>  -----  -----  -----  -----</p>
--	---

현 행			개 정			
<b>【별표】</b>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			<b>【별표】</b>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총 점		100	총 점		100	
거주사실 (30)	1. 10년이상 2. 5년이상 ~ 10년미만 3. 3년이상 ~ 5년미만 4. 1년이상 ~ 3년미만	30 25 20 15	거주사실 (25)	1. 10년 이상 2. 5년 이상 ~ 10년 미만 3. 3년 이상 ~ 5년 미만 4. 1년 이상 ~ 3년미만	25 20 15 10	
생활정도 (재산세납부액) (30)	재산세 납부액(세대합산) 기준 1. 재산세 미과세자 2. 10,000원 미만 3.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4.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5. 100,000원 이상	30 25 20 10 5	생활정도 (재산세납부액) (30)	재산세 납부액(세대합산) 기준 1. 재산세 미과세자 2. 10,000원 미만 3.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4.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5. 100,000원 이상	30 25 20 10 5	
출신학교 기준 (25)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중 1.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 기 타	25 20 15 10	출신학교 기준 (20)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중 1. 3개 과정을 졸업한 자 2. 2개 과정을 졸업한 자 3. 1개 과정을 졸업한 자 4. 기 타	20 15 10 5	
성 적 기 준 (10)	-신입생-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에 준하는 과목의 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균 2등급 이상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평균 2등급 미만	10 5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기준 1. 평균 2등급 이상 2. 평균 4등급 이상 ~ 2등급 미만 3. 평균 4등급 미만	15 10 5
	-재학생, 복학생-	<신 설> 1. 직전학기 평점 3.3 이상 2. 직전학기 평점 3.3 미만	10 5	-재학생, 복학생-	1. 직전학기 평점 4.0 이상 2. 직전학기 평점 3.3 이상 ~ 4.0 미만 3. 직전학기 평점 3.3 미만	15 10 5
기 타 (5)	1.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 장애인(학생) <신 설> <신 설>	5	기 타 (10)	1.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 장애인(학생 본인) 4. 다자녀가정(셋째이상) 5. 다문화가정	10	
※ 동점일 경우는 성적우수자가 우선순위			※ 동점일 경우는 생활정도가 우선순위			

### 1. 개정이유

포항시 출신 대학생의 학사생활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포항시 향토생활관 건립비 지원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포항시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기준 심사평점 변경(안 제3조)
  - 거주사실 30점 ⇒ 25점, 생활정도 30점 ⇒ 30점,  
학교기준 25점 ⇒ 20점, 성적기준 10점 ⇒ 15점, 그 밖에 5점 ⇒ 10점
  
- 향토생활관 입사신청 서류 변경(안 제5조)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 3학년 1학기 내신성적 점수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기준 변경(별표)
  - 성적우수자 ⇒ 생활정도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100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11. .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상송리,중산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체육시설
  - 명 칭 : 포항 송라제니스 컨트리클럽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소
  - 주 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48번지

○ 성 명 : (주)홍익레저산업 대표이사 이상규

4. 사업계획 내용

○ 부지면적 : 1,008,872m<sup>2</sup>

○ 건축면적 : 5,282.16m<sup>2</sup> (연면적 9,403.64m<sup>2</sup>)

○ 사업기간

- 당 초 : 2003.12.26 ~ 2011.11.24

- 변 경 : 2003.12.26 ~ 2012.5.2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1-101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02-1번지 외 2필지(지방하천 : 냉천)내에 해병대 포항 문덕숙소 도시가스배관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장 (인)

2011. 11. 29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m <sup>2</sup> )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냉천 (지방하천)	오천읍 문덕리	202-1번지 외 2필지	배관 매설	464	253.8	2011. 12. 5 ~ 2012. 1. 31	허가일 로부터 영구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대표 조성대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 - 1100 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11. 28.

1. 공 고 기 간 : 2011. 11. 28. ~ 2011. 12. 7. (10일간)

2. 폐 차 장 소 : 대원종합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2011. 12. 8.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대 상 차 량 :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대상 내역 참조

□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대상 내역

연번	방치 차량 내역			사 진	
1 ( 11-131)	차량정보	등록번호	미 상		
		차대번호	VT125F1006417		
		차 명	마그마 (적색)		
		소 유 자	미 상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방치장소		포항시 북구 창포동 619-2 새마을금고 맞은편 양산박 뒤편 골목		
2 ( 11-164)	차량정보	등록번호	미 상		
		차대번호	KM4CF42A711101231		
		차 명	효성 EXCEED (적색)		
		소 유 자	미 상		
	보관장소		대원종합폐차장		
	방치장소		포항시 남구 대잠동 462-5 골든빌원룸 앞 도로		
3	차량정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 유 자			
	보관장소				
	방치장소				

포항시 공고 제 2011 - 1103 호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 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11. 29.

1. 공 고 기 간 : 2011. 11. 29. ~ 2011. 12. 18. (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2011. 12. 19.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88버1301호 외 3대

공고처리 내역

◆ 총건수 : 4 ◆ 공고기간 : 2011-11-29에서 2011-12-18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치장소		이해관계
				방치장소	보관장소	
2011-115	88배1301 이화연	봉고프린티어 780506-*****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87-1 202호	포항시 북구 죽도동 139-44 강변장도텔 옆 도 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139-44 강변장도텔 옆 도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남구 환경관리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11.07.05.)</li> <li>● 교통행정과 - 의무보험('11.11.14)</li> <li>● 단독지당 : 우리파이낸셜㈜ 수원 팜빌 인계동 1122-12 ('10.08.23.)</li> </ul>
2011-146	31나2801 이동주	아토스 81012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291 103동 1709호 (대우타운)	포항시 북구 대흥동 613-1 역전파출소 앞 도 로	태평양중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손배범('10.2.24), 지관범('10.3.12)</li> <li>● 포항시북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10.8.23)</li> <li>● 건설교통과 - 추정차위반(2009-441428)</li> <li>●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과태료체납(200971906024286, 200971906033342, 190670100039202)</li> </ul>
2011-151	84다5536 박철조	겔로퍼이노베이 션밴 671201-*****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로 109번길 6-4 103호 (인덕 동)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08-1 장성현대 106동 앞 도로	태평양중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남구 세무과 - 지방세체납('11.8.18)</li> <li>● 부산 연제구 세무과 - 자동차세 등 9건</li> <li>● 환경위생과 - 배출가스정밀검사 1, 환경개선부담금 18건</li> <li>● 교통행정과 - 주차장 9, 책임보험 5, 정기검사 1건</li> <li>● 부산 중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li> <li>● 부산 북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 2</li> <li>● 부산 사상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li> <li>● 부산 수영구 교통행정과 - 추정차위반</li> <li>●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 도로교통법위반('08.8.6.)</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 - 건강보험료체납('03.4.25.)</li> <li>● 현대캐피탈(주) - 부산지원 2003카단21717('03.4.8.)</li> <li>● 지당 : LG캐피탈(주) '00.11.20. =&gt; 신한카드</li> <li>● 지당 : 김동욱 '02.1.21.</li> </ul>
2011-154	경북29다3146 최수동	쏘나타투 1.8 59092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 신천서로6길 39 (월피동)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 리 18-7 신행석리아파트 (주)태경ENG중합폐차장	태평양중합폐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 손배범위반과태료('10.12.21)</li> </ul>



포항시 공고 제2011 -110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11월 일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1. 11. 30. ~ 12. 29(30일간)
3. 송달 대상자 : 불임(7개 업체)
4. 송 달 내 용
  - 해당 대부업 등록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 확인 공고 업체 현황

번호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주소	등록일(변경일)
1	2000-경상북도-00063	K.H.G 대부, 대부중개	김홍규	590509-1*****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8-2	2009. 04. 01
2	2009-경상북도-00099	민음컨설팅대부	허성수	861108-1*****	포항시 남구 대도동 118-26	2009. 06. 05
3	2009-경상북도-00189	천지대부	김종명	570217-1*****	포항시 북구 학산동256 숲속마을 A동102호	2009. 11. 26
4	2010-경상북도-00098	신포항대부	강남욱	801120-1*****	포항시 북구 신흥동666-3	2010. 08. 31
5	2010-경상북도-00158	신우대부	최상화	760527-1*****	포항시 북구 동민1가 57-35 2층	2010. 12. 17
6	2011-경북포항-04	KCS대부, 대부중개	김종섭	570401-1*****	포항시 북구 양덕동336-1 장량후면시아109동 602호	2011. 03. 21
7	2011-경북포항-06	아주대부, 대부중개	최진주	761121-2*****	포항시 남구 대도동16-43 한진(아)나동 203호	2011. 04. 05

포항시 공고 제2011-1109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공고**

포항시 장기면 신창2리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12.1

- 신청기간 : 2011. 12. 1 ~ 2011. 12. 20(20일간)
- 대상마을 : 장기면 신창2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1명)
- 신청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30세 이상 60세이하인 자로써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홍보·마케팅, 홈페이지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 상근직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 다만, 지원대상마을 및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어는 겸직 가능
  - ※ 마을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어업계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1. 12. 23(금) 11:00 ~ , 시청3층 소회의실

□ 구비서류

-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원서 1부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기타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

□ 급 여 : 월 120만원(보조90%, 마을자부담10%)

□ 서류제출 및 기타문의

- 포항시 경제산업국 수산진흥과 수산시설담당(☎054-270-2762)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  
으로 상세히 기재
-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  
교육 등
-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월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  
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포항시의회공고 제 12 호

##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요일) 오전 11시 0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1년 11월 21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1년 1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11. 29.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1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량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신원기개업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병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인간상수용영양염류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15	불검출	불검출	0.16	0.16	불검출	불검출	0.15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sub>3</sub>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sub>3</sub> -N)	10mg/l이하	2.0	0.9	1.0	2.2	2.2	1.2	1.7	1.3	1.2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	불검출	0.01	0.04	0.04	불검출	0.02	0.02	0.03
인간상수용영양염류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63	0.41	0.57	0.61	0.48	0.40	0.40	0.51	0.92
	33. 총트리할로메탄(TTHMs)	0.1mg/l이하	0.054	0.044	0.071	0.046	0.036	0.041	0.056	0.044	0.077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29	0.034	0.058	0.021	0.014	0.028	0.029	0.032	0.060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9	0.010	0.013	0.018	0.014	0.011	0.019	0.010	0.015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6	불검출	불검출	0.007	0.008	0.002	0.008	0.002	0.002

구 번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안개댐수		임하댐수	행산강 복류수 안개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지관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37.경도(Hardness)	300mg/l이하	106	51	84	110	113	39	94	103	66
	38.과광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sub>4</sub> )	10mg/l이하	2.2	4.5	4.3	2.8	2.7	2.5	2.2	3.4	3.9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1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0	6.8	7.0	7.1	7.0	6.6	6.8	6.8	7.5
	45.아연(Zn)	3mg/l이하	0.008	불검출	불검출	0.002	0.003	0.024	0.006	0.068	0.004
	46.염소이온(Cl <sup>-</sup> )	250mg/l이하	26	10	11	28	27	12	25	13	16
	47.중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l이하	173	75	112	186	193	68	189	169	130
	48.철(F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12	0.14	0.11	0.11	0.12	0.15	0.14	0.10	0.07
	51.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0mg/l이하	48	12	15	53	53	14	40	40	16
	52.알루미늄(Al)	0.2mg/l이하	0.02	0.02	0.04	0.03	0.04	불검출	0.02	0.02	0.03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 수 장 급수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병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l이하	0.21	0.18	0.21	0.22	0.22	0.17	0.14	0.22	
6.동	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l이하	0.028	0.004	0.084	0.017	0.023	0.010	불검출	0.008	
8.염소이온	250mg/l이하	28	10	11	28	28	13	25	14	
9.철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6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